

## 2022년 KOICA-NGO 교육협력봉사단 에듀콥스(Edu-corps) 모집

(사)더프라이미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점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KOICA-NGO봉사단 에듀콥스(Edu-corps)를 해외에 파견합니다.

에듀콥스는 팬데믹 이후 해외 현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되는 교육협력봉사단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봉사단을 추구합니다.

1년의 기간만으로 에듀콥스로 파견되는 봉사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봉사단은 현지의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경험을 쌓게 합니다.

더불어 현지의 봉사자들이 스스로 에듀콥스가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대안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 사회문제해결에 직접 기여하고 싶은 사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주체가 되고 싶은 사람 등 새로운 시도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 ■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인원: 40명
- 파견국가: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 파견단위: 국가별 13~14명 파견. 1-4명이 1개 유닛으로 활동
- 파견기간: 2022년 11월~12월 중 파견일로부터 1년
- ※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특별임무를 부여 받는 경우 조기 파견할 수 있음
- 서류 접수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9월 30일(금) 자정 마감

### ■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 현지에서 에듀콥스 봉사단과 함께 활동 할 현지의 청년, 대학생 개인과 그룹을 발굴합니다.
- 지역사회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현지 청년과 함께 직접 교육봉사를 진행하거나, 교보재 개발 등을 통해 간접 참여를 합니다.
- 우리 에듀콥스 활동을 지지해 줄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와 사회적 자원을 멘토단으로 발굴하고 조직합니다.

■ 필수적인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0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60세 미만(1963. 1. 1.이후 출생자) 의 기저질환이 없는 3차백신접종(부스터샷) 완료자
  -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기에 심신이 적합 또는 건강한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해당국가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해외봉사단 파견시 일반여권으로 파견 예정이며,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상세안내 예정
- 파견 전 국내교육 전 일정 참석이 가능한 자

※ 가산점 부여

- 국제개발협력활동(해외봉사, ODA YP, 장기교육봉사, 언어교육 등) 유경험자
- 사회복지, 유아교육, 생활체육, 컴퓨터, 예체능 전공자
- 영어 또는 현지어 구사 가능한 자
- ODA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배려층(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6개월이상장기실직자,
- ☞ 여성가장,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안내입니다.

- 첨부된 파견활동가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vol@thepromise.or.kr)
- 지원서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 [KOICA-NGO 교육협력봉사단 파견활동가\_000(지원자 성명)]
- 제출기한: 2022년 9월 30일(금) 자정까지

※ 상기 지원 자격 관련, (2022년 10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60세 미만(1963. 1. 1.이후 출생자) 에 한해 지원 가능

※ 희망 국가 및 기관은 희망하는 국가 순서로 총 3지망까지 (3개 국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 안내입니다.

1) 1차 전형 (서류심사)

-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연령 등) 여부 점검
- ※ 지원서 학력, 자격, 경력란에 기재 후, 증빙서류 업로드된 사항만 인정

2) 2차 전형 (면접심사, 적합도검사 / 온라인(비대면) 실시)

- (기술면접) 지원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점검
- (일반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적응력 등 소양 평가
- (적합도검사) 온라인 실시

3) 최종 심사 (신체검사, 신용조회)

- (신체검사) 1차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2차 검진 추가 진행
- (신용조회) 신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 다음 분야의 전문성이나 재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교육 트랙: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교육학 등의 소양을 가진 사람
  - 문화·예술·체육 트랙: 비언어적 교육방식을 통해서 현지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미디어: 미디어 매체 및 장비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조사 및 교육이 가능한 사람
  - 심리: 아동, 청소년 심리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심리 관련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ICT: 기술역량의 이전이나 기술을 활용해 교육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사람
  - 사회복지·청소년지도: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지원에 관련하여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사람
  - 행정: 리더, 통역, 총무, 안전 등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등
- ※ 위 외에도 심사과정에서 또 다른 분야의 재능과 전문성을 보여주시면 고려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생의 경우) 1부
-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
- 해당 직종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
- 보호자동의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질병, 병력, 결격사유 부 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2-2호 서식)
- 사회배려층 증빙서류(붙임1 참조)
- 병적증명서 (남성지원자 한함)

※ 증빙서류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받습니다

내용		캄보디아	동티모르	필리핀
입출국경비	항공료, 비자비	실비	실비	실비
생활비	현지생활비(월)	\$540	\$620	\$550
주거비	현지주거비(월)	\$400(도시)	\$700(도시)	\$400(도시)
		\$350(기타)	\$700(기타)	\$260(기타)
현지정착비	현지정착비(1회)	\$540	\$620	\$550
	현지어심화학습비	\$100		
	파견물품비	130,000원		
안전관리비	보험가입비	실비		
	의료보안지원 서비스비	실비		
활동지원비	활동물품비	\$125*12개월		

출국귀국준비금	출국준비금	500,000원		
	귀국준비금	\$540	\$620	\$550
귀국단원지원비	커리어적립금	600,000원*12개월		
	귀국검진비	240,000원		
기타	예방접종, 안전물품, 의약품, 격려물품 지원			

- 커리어 개발을 위해 봉사단원 활동 과정과 활동 이후에도 점프 사회인멘토단의 다양한 진로, 취업 멘토링 제공
- 국제협력사업 재참여 지원
  - 임기만료 귀국단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신입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하며, 최종 채용 확정시 봉사단 활동기간 경력 인정

■ 선발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모집 및 서류 접수	8월 22일(월) ~ 9월 30일(금) 자정	이메일 접수
모집설명회	9월 6일 (오후 3시)	ZOOM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10월 6일(목) 오후 2시	개별 공지
적합도검사	10월 11일(화) ~ 14일(금)	온라인
면접심사	10월 18일(화) ~ 21일(금)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건강검진	10월 25일(화) ~ 28일(금)	한국건강관리협회
신용조회	10월 25일(화) ~ 28일(금)	신용조회
신체검사 재검	11월 2일(수) ~ 11월 5일(토)	해당자 한함

2차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11월 7일(월)	개별 공지
사전교육 (온오프라인 수시)	11월 8일(화) ~ 11월 30일(수)	서울자원봉사센터
집체교육	11월 중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파견	12월 1일 이후	일부 사전 파견 가능

- \* 적합도 검사 결과 봉사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체검사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건강검진 불합격자는 파견이 취소됩니다.
- \* 합격 후에도 신청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합격자는 반드시 교육 전 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지원 전 반드시 확인)

☞ 지원 전

구분	유의사항
단신부임원칙	○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여야 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정리	○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공무원 포함)는 소속기관과 협의(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의거,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p>- 다만,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 (<a href="http://kov.koica.go.kr">http://kov.koica.go.kr</a>)에 있는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p> <p>※ 모집 일정은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 "모집선발" ⇒ "모집일정" 클릭하여 확인 가능 (<a href="http://kov.koica.go.kr">http://kov.koica.go.kr</a>)</p>
중복지원 불가	<p>○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유형의 '코이카봉사단' 및 '코이카자문단'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전형 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p> <p>※ 중복지원 불가한 봉사단 유형에는 KOICA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드림봉사단, KOICA 자문단이 해당됩니다. (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등 위탁형 봉사단 미포함)</p>
선발일정	<p>○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p>

☞ 인재풀 자격 관련

구분	유의사항
인재풀 단원	<p>○ 인재풀 단원도 에듀콥스 봉사단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류 및 면접전형 면제 없이 모든 전형에 필수 참여)</p>
인재풀 유지	<p>○ 최종합격자(국내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는 경우 인재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p>

구분	유의사항
국가배정	<p>○ 최종 국가배정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활동 전문성과 현지 협력단체 요청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파견기관은 현지 교육 종료 후 최종 확정됩니다.</p>
국내교육 (온/오프라인)	<p>○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시점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 국내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외봉사단 자격을 부여받으며,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p> <p>○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됨을 유념 바랍니다.</p> <p>○ 교육 시작일부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p>
백신접종 완료	<p>○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부스터샷 포함)이 필수사항이며, 파견일 기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만 협력국 파견이 가능합니다.</p> <p>○ 국내교육 시작 후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p>
기타	<p>○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이후라도, 병력(病歷)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 증명서 위조 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p>



○ 파견 기간은 기본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http://www.koica.go.kr))에서 ‘해외봉사단 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는 아래로 해주십시오

- 더프라이스 국제사업팀 강성원 매니저 070-4903-8102
- 홍나연 매니저 070-4903-8103 / [vol@thepromise.or.kr](mailto:vol@thepromise.or.kr)

< 붙임 1 >

2022년 KOICA-NGO봉사단(Edu-Corps)  
사회배려층“준용 관련법”및“제출서류”안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u>차상위계층</u>”</li> </ol>
제 출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li> <li>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중 1부</li> </ol>

###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p> <p>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p> <p>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li> <li>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li> </ol>
제 출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li> </ol>

###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li> </ol>
-------------	---

	<p>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라. 가족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p> <p>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p> <p>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p> <p>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p> <p>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p>
<p><b>제출서류</b></p>	<p>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p> <p>2. 가족관계증명서 1부</p>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p><b>관련법</b></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p> <p>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p> <p>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b>제출서류</b></p>	<p>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p> <p>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p> <p>3. 가족관계증명서 1부</p>

류	
---	--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 련 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 출 서 류	1. 구직등록확인서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등록부</li> <li>•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li> </ul>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가타가족생계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 련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b>법</b>	<p>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p> <p>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p> <p>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p> <p>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b>제출서류</b>	<p>1. 취업지원대상지증명서</p>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b>관련법</b>	<p>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p> <p>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p> <p>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p>
------------	---

	<p>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p> <p>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p> <p>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p> <p>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제 출 서 류</p>	<p>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p>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p>관 련 법</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 출 서</p>	<p>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자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p> <p>2. 주민등록등본 1부</p>

류	
---	--